

##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

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 
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### 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용역명 : 2026년 하반기 내기교 등 27개소 농어촌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 
나. 위 치 : 충청남도 홍성군 일원  
다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90일  
라. 용역량 : 내기교 등 27개소 교량 정기안전점검 1식  
마. 기초금액 : 금41,523,000원(금사천일백오십이만삼천원,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로 포함)  
※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,  
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.

### 2. 견적서 제출 및 개찰

- 가. 개시일시 : 2026. 8. 13.(목) 20:00  
나. 마감일시 : 2026. 8. 20.(목) 15:00  
다. 개찰일시 : 2026. 8. 20.(목) 16:00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 
※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.  
※ 개찰 결과 낙찰하한을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,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 
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# 3.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(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)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
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,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(낙찰업체는  
계약체결일까지) 법인등기부상 본점(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 
관련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)이  
홍성군 내이며,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.

- 1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규정에 의한 【안전진단전문기관  
(교량 및 터널)(업종코드: 1395)】 또는 【안전진단전문기관(종합)(업종코드: 4963)】  
또는 【안전점검전문기관(토목)(업종코드: 6208)】을 등록한 업체  
2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 
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  
자로 등록된 자를 보유한 업체.  
※ 책임기술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 
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 
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※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「시설물특별법 시행령」 [별표 5]을 따릅니다.

※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,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 
증명서류\*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 
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.

\*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, 교육 이수증(보수교육 포함) 1부

- 3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 
시설물의 설계·시공·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  
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- 나. 본 용역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  
및 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」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 
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.

- 다.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
### 4. 견적서의 제출

- 가.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에 전자입찰  
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 
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이하 “나라장터”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나.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 
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  
다.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 
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 
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 
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 
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5. 견적서 제출 무효

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39조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.

## 6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

- 가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$\pm 3\%$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(2개)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- 나.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**88%**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「지방계약법」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다.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.
- 라.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자동 추천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.
- 마.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천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,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## 7.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

- 가.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,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「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### 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법 제4조, 제9조)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 8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, 행정안전부 예규,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과업지시서,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,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.
- 다.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,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1588-080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·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·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,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(1인수의,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)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- 사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)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(3급 이상)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 하는 자 등은 물품·용역·공사 등의 수의계약(1인수의,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)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.
  - ※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「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」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※ 고위공직자의 범위 :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(정의) 참조
- 아.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(041-630-1401), 용역 관련 사항은 건설과 도로관리팀(041-630-144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13.

홍 성 군 재 무 관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1쪽)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주자            | 발주기관             | 발주부서 | 발주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발주내용 (계 약 명 기 재) |      | [ ] 공사 [ ] 용역<br>[ ] 물품 [ ] 기타 |
|                | 수의계약 사유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상대자<br>(확인인) | 성명               | 소속   | [ ] 개인 [ ] 법인<br>[ ] 단체 [ ] 기타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| 주소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①               |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②               | 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③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④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⑤               |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⑥               |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⑦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⑧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발주자<br>확인<br>사항 |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 “예”를 답변한 경우,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*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(기관·법인·단체명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계약상대자(확인인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(안)

○○○는 홍성군으로부터 도·수급(수탁)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는 ○○○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.
- 매년 안전·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·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(유해·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, 산업·시민재해 발생시 대응, 대피훈련 등)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·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.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·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-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·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,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.
-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○○○는 홍성군 ○○○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  
기 관 명 :  
대 표 자 : (인)

홍성군수 귀하